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허종식・김정호・김교흥

윤준병 • 이수진 • 강준현

이연희 • 박성준 • 정일영

노종면 • 최민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기신도시 및 2·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 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 방공사에 대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 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9.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		
	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출자금 지원		
<u>9.</u> (생 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